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8291     |
| 의 퇴 인 | 조은희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 4. 9. |
| 추계번호  | 25C1037     |

#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<br>(안 제6조) | 90   | -    | -    | 90   | -    | 180 | 36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(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)  |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13조(공공예식장의 개방 등) |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(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)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3조(공공예식장의 개방 등) | ×    |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3조에 따른 공공예식장의 개방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 - 참고로, 공공 예식 공간 정보는 ‘공유누리’ 홈페이지와 ‘서울마이웨딩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
    - 공유누리 홈페이지: [eshare.go.kr](http://eshare.go.kr)
    - 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: [wedding.seoulwomen.or.kr](http://wedding.seoulwomen.or.kr)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# 가.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 따라 결혼서비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예상

- 첫 조사는 제정안 시행 첫 해에 실시하고, 조사 주기는 3년으로 가정함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비 등으로 3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 - 기획재정부는 용역계약을 통해 2024년에 “결혼서비스 실태조사”를 실시하였음<sup>1)</sup>

[표 4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<br>(안 제6조) | 90   |      |      | 90   |      | 18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수행기관: 육아정책연구소(2024. 5. 17. ~ 2024. 11. 16.), 계약금액: 86,363,630원  
(자료: [www.prism.go.kr](http://www.prism.go.kr))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이제정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|
| 이제정 | 02-6788-3739 | jejeong2@na.go.kr |